

보도 일시	2022. 6. 15.(수) 11:00 6. 1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5.(수) 09:00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삼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326)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약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 6월 16일 자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하였다.

* (시행일) 약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규정(22.6.16일), 그 외 규정(23.6.16일)

축산업 중 약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약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약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 '20년 축산약취 관리대상 농가(1,070호)는 축종별로 돼지 947건(88.5%) > 기금 81건(7.6%) > 소 42건(3.9%) 순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유형(축산법 시행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 것

- (1) 부숙(썩혀서 익힘)된 액비(액체 비료)를 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2) 음수(飲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둘째,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되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 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 통상적으로 임시분뇨보관시설은 1.2~1.8m 내외의 깊이로 설치함

** 다만,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은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음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